

영주권자등 입영희망제도란?

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,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,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 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다만,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함.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.

출원대상자

- 영주권을 얻은 사람
-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(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포함)을 얻은 사람
-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
-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,
 - 복수국적인 사람
 -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
 - 부 또는 모가 영주권(또는 시민권)을 얻은 사람

접수 및 제출서류

- 접수 : 병무청 홈페이지, 재외공관, 지방병무청,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

※ 병무청 홈페이지 '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' 접수

- "병무청 홈페이지 ⇨ 민원마당 ⇨ 민원신청 ⇨ 「국외여행·국외 체재 민원신청」 ⇨ 「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」 ⇨ 공인인증서 로그인 ⇨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"

- 제출서류 :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신청서(인터넷 신청시 생략), 영주권사본

병역의무

-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
 - 입영희망시기는 국외이주자의 국내체재 가능기간의 범위(6개월)에서 반영
 -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
 - 현역병 모집 지원시 선발가산점 부여
- 본인의 적성, 특기,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
 - ※ 입영 후 1주간 "군(軍) 적응 프로그램"을 운영하여 한국 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(육군훈련소, 분기 1회)
- 훈련소 입소 후 희망근무지역(1~3지망) 파악 후 근무지 배정
 - ※ 근무지역을 각 지망별 1개 도시 선택(육군훈련소 입소의 경우)
 - 1지망 : 서울, 인천, 대전, 대구, 부산, 울산, 광주
 - 2지망 : 고양, 의정부, 동두천, 양주, 춘천, 원주, 강릉, 성남, 안양, 수원, 용인, 전주, 창원
 - 3지망 : 기타지역

2014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(육군훈련소)

- 3. 10.(월) / 5. 12.(월) / 8. 11.(월) / 10. 6.(월)
 - ※ 위 입영일자 이외의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입영이 가능함

입영희망신청의 취소

- 사정에 의하여 영주권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 신청서 제출.

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

-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하며,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(전역시 편도 항공료지급)
 - ※ 휴가여비 지급 및 신청 : 소속부대
-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가능

